

의정활동보고서

- 제260회 임시회(2013. 1. 23 ~ 2. 1)
- 제261회 임시회(2013. 3. 13 ~ 3. 26)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보고서



제260회 임시회(2013. 1. 23 ~ 2. 1)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를 3백만
도민과 함께 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민생현장 탐방과 지역
현안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조례안을 어느 해
보다 많이 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도 의정의 내실을 크게
다진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인 경북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확보와 투자유치 5조 6천억원, 일자리 6만 9천개 창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전국 학교교육과정 공모전에서 최우수 학교 배출과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경북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금년은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로 우리 경북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FTA대응, 균형발전과 명품교육 실현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새해 소망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17
IV. 민원처리		19
V. 본회의 보고사항		21
VI. 5분 자유발언		41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41
□ 김영기 의원(기획경제위원회/청송)		44
□ 김창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비례)		48

부 록

□ 조례안(8건)	53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0회 임시회는 2013년 1월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1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1회의 상임위원회, 4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3일(수)오후 2시에 개의하여 문화환경위원회 김명호 의원의 “도청신도시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 요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월 1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 의원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 관련”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창숙 의원의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안전심사에 있어서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 등 총 9건을 의결 하였다.

조례안 중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상임위별 안전심의에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유보하였다. 행정안전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심사 유보하였다.

이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및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독도수호·서민경제·경북대구상생발전·도청 이전 등 4개 특별위위원회에서도 소관별 업무보고 및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3년 1월 23일(수)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3년 1월 23일 ~ 2월 1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58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회	15	1	2	2	2	1	2	1		4
누계	346	27	44	45	38	31	43	37	41	40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3(수) 14:00 (제1차)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전처리 ○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 1(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김영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창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4(목) 10:00	☐ 안전심사 ○ 2013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4(목) 11:00 (제1차)	☐ 안전심사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안 ☐ 업무보고 ○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경북테크노파크	
1. 25(금) 11:00 (제2차)	☐ 업무보고 ○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4(목) 10:00 (제1차)	☐ 업무보고 ○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1. 25(금) 11:00 (제2차)	☐ 업무보고 ○ 행정지원국, 경북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3(수)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 ☐ 업무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1. 24(목) 11:00 (제2차)	☐ 업무보고 ○ 환경해양산업국 및 관련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4(목) 11:00 (제1차)	☐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농수산국	
2. 1(금) 09:30	☐ 농수산 소위원회 개최 ○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관련 업무보고 - 도청, 도 교육청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4(목)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업무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1. 25(금) 11:00 (제2차)	☐ 업무보고 ○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8(월) 11:00 (제1차)	☐ 업무 보고 ○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3(수) 11:00	☐ 주요 업무보고 ○ 독도정책과, 안용복 재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3(수) 11:30	☐ 2013년도 신년 간담회 ○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3(수) 11:30	☐ 2013년도 신년 간담회 ○ 경북·대구 상생발전 정책 관련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30(수) 11:00	☐ 주요 업무보고 ○ 도청이전추진본부	신청사 건립현장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4 (375)	10 (365)	6 (291)	4 (70)	(4)	(3)	4 (7)	
조 례 안	소 계	12 (214)	8 (204)	4 (145)	4 (55)	(4)	(3)	4 (7)	
	의 회 제 안	8 (87)	4 (80)	2 (60)	2 (20)		(2)	4 (5)	
	도지사 제 출	2 (85)	2 (82)	2 (60)	(21)	(1)	(1)	(2)	
	교육감 제 출	2 (42)	2 (42)	(25)	2 (14)	(3)			
규 칙 안		(3)	(3)	(3)					
예산·결산		(21)	(21)	(6)	(15)				
동의·승인		(30)	(30)	(30)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34)	(34)	(34)					
기 타 안		2 (70)	2 (70)	2 (70)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7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12. 8. 31.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심사유보)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1. 10. 장경식 의원 외 2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 11. 김영기 의원 외 4인, 교육위원회 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 업	기 타
계	7 (94)		2	2	2	1				
의 회 운 영	(1)									
기 획 경 제	(12)									
행 정 보건복지	1 (16)		1							
문 화 환 경	1 (8)		1							
농수산	(3)									
건 설 소 방	4 (49)			2	2					
교 육	1 (5)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7 (94)	7 (94)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1	1				
문화환경	1	1				
농 수 산						
건설소방	4	4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2건(조례안 12)

제출·발의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도기욱 의원 외 10명 (2013. 1. 1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 (2013. 1. 14)
김하수 의원 외 1명 (2013. 1. 15)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2013. 1. 15)
전찬걸 의원 (2012. 12. 11)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1. 14)
황이주 의원 외 3명 (2012. 12. 17)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경식 의원 외 1명 (2013. 1. 10)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박병훈 의원 (2013. 1. 10)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2013. 1. 14)
경상북도지사 (2013. 1. 14)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 (2013. 1. 14)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김영기 의원 (2013. 1. 11)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2013. 1. 14)
김수용 의원 (2013. 1. 1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3. 1.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18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12. 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12.27 (제3383호)
"	"	경상북도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84호)
"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85호)
"	"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3386호)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87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88호)
"	"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3389호)
"	"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3390호)
"	"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391호)
"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392호)
"	"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93호)
"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제3394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12.24 (제3380호)
"	"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81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82호)
2012.12.14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12.12.31 (제3395호)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96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397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 원 회	12. 24. ~ 12. 26	제 주 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및 의회운영에 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선진 의정활동을 업무에 도입 • 녹색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 시설견학과 심신 수련을 통한 체험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들의 마인드 함양과 화합을 도모
농 수 산 위 원 회	12. 21	대 구 스타디움	• 2012년 도농상생 한우 소비촉진 행사 참석 관계자 격려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2012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2. 12. 17(월) 14:00
- 장 소 : 구미코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제7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2. 17(월) 14:00
- 장 소 : 도의회 제2별관 세미나실
- 참 석 : 윤성규 의원

○ 2012년 경상북도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석

- 일 시 : 2012. 12. 20(목) 14:00
- 장 소 : 경주 대명리조트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경북정체성 통합포럼 참석

- 일 시 : 2012. 12. 21(금) 10:00
- 장 소 : 엑스코 인터불고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25회 중증장애인 송년위안행사 참석

- 일 시 : 2012. 12. 21(금) 11:00
- 장 소 : 구미 컨벤션웨딩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윤창욱·이태식 의원

○ 칠곡소방서·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교류행사 참석

- 일 시 : 2012. 12. 21(금) 11:00
- 장 소 : 칠곡소방서
- 참 석 : 김희원 의원

○ 2012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2. 21(금) 14:00
- 장 소 :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원·한재석 의원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12. 21(금) 17:00
 -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경북자율방범대 범죤예방행사 참석
 - 일 시 : 2012. 12. 22(토) 10:00
 - 장 소 : 구미대학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제7회 경북 가족배드민턴 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2(토) 11:00
 - 장 소 : 울진군민체육관
 - 참 석 : 황이주 의원
- TBC 성금 생방송 참석
 - 일 시 : 2012. 12. 24(월) 13:00
 - 장 소 : TBC방송국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2년 경상북도 자연보호운동 평가대회 참석
 - 일 시 : 2012. 12. 26(수) 11:00
 - 장 소 : 문경시민회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2012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12. 26(수) 14:30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전찬걸 위원장, 윤성규·이태식 의원

○ 대구 MBC 「시사광장」 좌담토론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0:00
- 장 소 : MBC 방송국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증축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1:00
- 장 소 :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한국유네스코 경상북도지회 총회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8:00
- 장 소 : 포항 목화예식장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송년의 밤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8:1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8(금) 15:30
- 장 소 : 의회지하식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2 제야의 경복대중 타종행사
 - 일 시 : 2012. 12. 31(월) 24:0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 위원장, 김기홍 의원
- 제15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참석
 - 일 시 : 2013. 1. 1(화)
 - 장 소 : 호미곶 해맞이광장
 - 참 석 : 이정호 · 한창화 의원
- 2013년 신년 현충탑 참배
 - 일 시 : 2013. 1. 2(수) 07:3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새누리당 경북도당 · 대구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2(수) 10:30
 - 장 소 : 경북도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 2013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2(수) 12: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 채옥주 · 정상진 · 김수용 위원장, 김기홍 · 이상용 · 곽광섭 · 배수향 · 변우정 · 서정숙 · 심정규 · 이경임 · 이태식 · 정영길 · 최우섭 의원

○ 포항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포항 필로스호텔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장경식 의원

○ 구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구미상공회의소
- 참 석 : 송필각 의장, 윤창욱·김봉교·심정규 의원

○ 영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영주시청 3층 대강당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영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5:30
- 장 소 : 영천상공회의소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2013년 행복나눔 봉사활동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0:00
- 장 소 : 상주보육원, 성심요양원
- 참 석 : 강영석·한재석 의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임식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1:00
 -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한수원 이전 기념식 및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2:30
 - 장 소 : 동덕빌딩
 - 참 석 : 최우섭 의원
- **한수원 경주본사 건설본부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6:20
 - 장 소 : 동부빌딩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용·최학철 의원
- **해병전우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8:00
 - 장 소 : 성주웨딩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김천소방서 2013년 명예소방서장 위촉**
 - 일 시 : 2013. 1. 4(금)
 - 장 소 : 김천소방서
 - 참 석 : 나기보 의원
- **2013 경북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7(월)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채옥주
위원장, 이 달·이경임 의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 일 시 : 2013. 1. 8(화) 10:2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김기홍·배수향·
서정숙 의원

○ 2013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8(화) 11: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전 도의원

○ 2013 제경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8(화) 18:3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3 새마을가족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10(목) 11:00
- 장 소 : 경상북도새마을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윤창욱·구자근·
박태환·이태식 의원

○ 농어업 유관기관·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10(목) 11:00
- 장 소 : 농협경북지역본부 회의실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 원장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 11(금) 10: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김창숙 · 이경임 의원

○ 경상북도 원로교육자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11(금) 11:00
- 장 소 : 그랜드관광호텔
- 참 석 : 최우섭 · 홍광중 의원

○ 경북 핸드볼협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1. 11(금) 18:00
- 장 소 : 선산청소년수련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상북도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방문 참석

- 일 시 : 2013. 1. 12(토) ~ 1. 21(월)
- 장 소 :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이상용 · 이경임 · 황이주 의원

○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1. 15(화) 11:00
- 장 소 : 박대통령 생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윤창욱 의원

○ 학부모리더 연수회

- 일 시 : 2013. 1. 15(화) 13:00
- 장 소 : 칠곡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추재천 의원

○ 2013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3. 1. 15(화) 19:30
- 장 소 : 오페라하우스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3. 1. 17(목) 16:00
- 장 소 : 이스탄불시청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3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1. 18(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한재석 의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1. 22(화) 11: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본관1층
- 참 석 : 장두옥 위원장

【시·군 단위 행사】

○ 칠곡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12. 17(월) 13:50
- 장 소 : 칠곡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추재천 의원

○ 포항교육지원청 주최 청소년폭력예방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2. 12. 20(목) 14:00
- 장 소 : 포항 중앙초등학교 및 시내일원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성주 명인중·정보고 다목적강당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0(목)
- 장 소 : 성주 명인중·고등학교
- 참 석 : 정영길 의원

○ 봉화 거촌3리 귀동경로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1(금)
- 장 소 : 봉화 거촌3리 귀동경로당
- 참 석 : 권영만 의원

○ 2012 생활체육동호인 및 시민한마음축제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2(토) 15: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서정숙·윤성규 의원

○ 안강새마을금고, 사랑나눔 봉사활동 참석

- 일 시 : 2012. 12. 22(토)
- 장 소 : 안강읍 일원
- 참 석 : 최학철 의원

○ 도민과 함께하는 의성마늘씨름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12. 23(일) 10:00
- 장 소 : 의성체육관
- 참 석 : 이왕식 의원

○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업무협의회

- 일 시 : 2012. 12. 26(수) 14:00
- 장 소 : 성주군 문화원(1층 회의실)
- 참 석 : 박기진·배수향 의원

○ 제5회 청도군수배 생활제조경연대회

- 일 시 : 2012. 12. 26(수) 18:30
- 장 소 : 청도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참 석 : 박권현 의원

○ 2012 상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0:00
- 장 소 : 상주시민체육관
- 참 석 : 한재석 의원

○ 「희망의 스타하우스」 제1호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1:00
- 장 소 : 영천 대창면 신평리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2012 포항 체육인의 밤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12. 27(목) 18:00
- 장 소 :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장두옥 위원장

○ 2012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12. 31(월) 14: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제17회 영덕 해맞이축제

- 일 시 : 2012. 12. 31(월) 14:0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김기홍 의원

○ 구미시 새해맞이 타종식 참석

- 일 시 : 2012. 12. 31(월) 22:00
- 장 소 : 구미 동락공원 광장
- 참 석 : 구자근 의원

○ **대설피해 지역 현장 확인**

- 일 시 : 2012. 12. 31(월)
- 장 소 : 고령군 일원
- 참 석 : 광광섭 의원

○ **신년 해맞이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 1(화) 07:00
- 장 소 : 봉덕산 정상
- 참 석 : 도기욱 의원

○ **희망 2013! 울릉 해맞이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 1(화) 07:00
- 장 소 : 울릉 저동 촛대바위 일원
- 참 석 : 이용진 의원

○ **2013 울진군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2(수) 11:00
- 장 소 : 울진군민체육관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왜관청년협의회·칠곡상공회의소 공동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0:00
- 장 소 : 칠곡상공회의소 대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의원

○ 경주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이 달·최우섭 의원

○ 안동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안동 리첼호텔
- 참 석 : 김명호 의원

○ 문경시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문경 영강문화센터 3층 강당
- 참 석 : 고우현 의원

○ 경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
- 참 석 : 서정숙 의원

○ 영양군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3(목) 11:00
- 장 소 : 영양군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의원

○ 2013년 새해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 일 시 : 2013. 1. 4(금) 11:00
- 장 소 : 경주 양북면, 양남면, 외동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박약회 정기 총회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1:00
- 장 소 : 안동동부회관
- 참 석 : 홍광중 의원

○ 군위군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4(금) 14:00
- 장 소 : 군위군청 대회의실
- 참 석 : 홍진규 의원

○ 2013 안동 암산 얼음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 5(토) 14:00
- 장 소 : 암산유원지
- 참 석 : 이영식 의원

○ 하망동 효동경로당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1. 7(월) 11:00
- 장 소 : 영주시 하망동 효동경로당
- 참 석 : 김종천 의원

○ 의성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7(월)
- 장 소 : 의성청년회의소
- 참 석 : 나현아 의원

○ 2013 인동지역 합동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8(화) 11:00
- 장 소 : 구미 인동초등학교 목련관
- 참 석 : 장영석 의원

○ 2012년 구미교육실적발표회 참석

- 일 시 : 2013. 1. 8(화) 14: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박태환 의원

○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1. 8(화) 16:00
- 장 소 : 문경여성회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포항시 양학동 개발자문위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8(화)
- 장 소 : 양학동 주민센터 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9(수) 10:3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문경읍 하초리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 9(수)
- 장 소 : 문경읍 하초리 마을회관
- 참 석 : 이시하 의원

○ 구미 월평2동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3. 1. 11(금)
- 장 소 : 월평2동 주민센터 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상주 염산누출사고관련 현장확인 등

- 일 시 : 2013. 1. 12 ~ 1. 22
- 장 소 : 상주 청리면 마공리
- 참 석 : 강영석 의원

○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 18(금) 11:00
- 장 소 : 경산 컨벤션센터
- 참 석 : 김창숙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3년 1월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도청신도시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 요구>>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지방법원 체계의 불균형성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웅도경북의 위상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청신도시에 새로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개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 산하에 5개의 고등법원이 있고, 예하에 18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하여 예하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지방법원체계에는 형평성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예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체 인구는 약 2천 6백 5십만 명인데 9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예하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인구는 약 7백 9십만 명인데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예하 대전, 충남, 충북 전체 인구는 약 5백 1십만 명 인데 2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예하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체 인구는 약 5백 8십만 명 인데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예하 대구, 경북 전체인구는 약 5백 2십 만명 인데 대구지방법원 단 한 개가 있을 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무려 8개 지원이 소속되어 있어, 전국 18개 지방 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경북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합당한 선례도 있습니다.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부산 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다음, 2개월 뒤인 9월 1일에 부산지방 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1992년 5월 1일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 되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도청 신청사 개청에 즈음하여, 기존의 대구지방 법원 안동지원을 안동과 상주, 의성, 영덕지원 등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조속한 시기에 신도시 안에 지방 법원 청사를 개청하게 된다면, 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웅도 경북의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검찰청이 안고 있는 업무과중을 덜게 될 것이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신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며, 용도경북의 도읍지로서의 상징성이 배가되어, 인구 10만의 신도시건설 사업에도 탄력을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때마침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다면, 신청사 개청과 함께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도청신도시건설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도시 내에 지방법원 청사가 개청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일찍이 지방분권을 주창하는 최선봉에 서오셨고, 미래문명사회에 걸맞은 국가운영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신 도청소재지가 사법부문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실상부한 신도읍지가 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년 2월 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영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중앙정부의 지방자차단체 예산 부담관련>>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부터 정부가 시행해 온 무상보육정책이 금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갖고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육정책이 나오고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기준으로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육아 문제와 교육으로 지출되는 높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단체는 아기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공보육정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3월,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0~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명실 공히 무상보육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무상 보육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놓고 보면, 당초 2013년도 보육예산은 3,27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아 모두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370억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중 국비는 326억원이고 지방비는 44억원입니다. 지방비 44억원중 도는 13억원, 시·군은 31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급조되어 만들어진 선거 공약들은 반드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지키려고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재정악화를 유발해서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중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시 차후부터 반드시 다음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세입 관련 제도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가 추가 재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아 무상보육 정책은 중앙 정부가 결정했으므로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재원은 정부가 추가 지방재정 몫을 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설계되어 있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중앙정부가 사업과 예산을 지정해 주는 국고 보조사업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는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만약 정부가 추가 지방재정 몫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OECD는 0~2세 영아들은 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의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인간발달이론상 더 교육적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0~2세 모든 영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등 떠밀려서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현행 무상보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무분별한 재정관리로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고, 보육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갖고 공보육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숙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관련>>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과 교육감 직접 교섭 등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벌써 수일째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을 외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 추위를 무릅쓰고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서야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에는 교사와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교과부 추산 15만 명, 노조 추산 20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60% 정도가 바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중 우리 경북지역에는 1만 1천 명(11,000명) 정도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이 매해 동일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본급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 바로 학교비정규직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은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그 복무의 지휘·감독을 학교장이 가지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전횡에 대항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들은 2011년 7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 노조에서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을 상대로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고 2012년 8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구·경북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이어 행정법원에서까지 인정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판결에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은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에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28일, 이영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와의 면담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감 직고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대량해고 문제로 학교비정규직은 겨울방학만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이 좋게 지내다가 12월이 되면 해고대상이 본인이 되지 않을까 하여 동료끼리 서로서로 눈치를 보며 남이 되어 버리는 실상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고용불안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경기도·강원도·광주광역시에서는 시·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올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함으로써 무기 계약직 전환의 벽을 낮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정책은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북도내 학교비정규직들은 2년 이내에 부당 해고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도교육청 스스로가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학교 비정규직 3,300여 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사서, 상담복지사, 초등돌봄강사 등 2,700여 명을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도 학교비정규직들의 교육감 직고용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타시도의 조례 제정 이후의 예를 들어보면 교육감 직고용은 학교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업무 능력향상을 이루어 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했을 때 비정규직들의 노동의 질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등의 제도화는 우리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함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육감의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맞서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8건(원안가결 4, 수정가결 4)

■ 조 례 안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5조제4항 관련 별표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면 제 대 상<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자. 종교단체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등록, 다만, 면제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면제 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자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다. 삭제 <2003. 12. 31> 라.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마. 주민 직영사업 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사.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아.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탄광지역 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 차.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타.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 하.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한시 면제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면제대상		[별표 2] 면제대상	
구분	매출 면제대상 및 내용	구분	매출 면제대상 및 내용
3. 한시 면제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u>2012년 12월 31일까지</u>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3. 한시 면제 대상	(현행과같음)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도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하 “지원지역”이라 한다)”이란 생활환경, 사회기반 수준 등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불리한 환경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별·권역별 균형발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시군간 불균형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
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지역 선정) ①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구축하고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 지원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 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3. 지방재정기반의 취약 정도
4. 산업활동 기반 및 소득수준 정도
5.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지역별·생활권역별 형평성 정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지원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지원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③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별 발전수준, 제6조에 따른 지원지역 선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련 있는 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3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환경분야 전문가,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회 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 “설치·운용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로 하고
- 안 제8조 제1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특별회계 설치)도지사는설치·운용한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도지사는설치·운용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8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생략) 1.(생략) 2. 국가균형발전법 3. 지방채 및	제8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제정안 같음) 1.(제정안 같음) 2.(삭제) 2.지방채 및	도청이전 등 도의 재정여건을 종합적 으로 분석재정을 탄력 적으로 운용하기 위 하여 ①항 2호를 삭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 시행규칙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 사전준비를 위하 여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주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2.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군 단위 실태조사 계획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진흥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활동의 장려)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의거 관련 사업추진시 비용부담 요인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 작은도서관 조성은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도서관 선정
- 국비지원사업은 매년 3개소, 도비 지원사업은 매년 2개소 선정 및 개소당 국비 또는 도비 50백만원 지원
- 작은도서관 조성은 국도비를 지원하고, 설치 후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비	150	150	150	150	150	750
	○						
	소계(a)	150	150	150	150	150	750
세출	○작은도서관 조성	250	250	250	250	250	1,250
	○						
	소계(b)	250	250	250	250	250	1,250
□총 비용(a-b)		100	100	100	100	100	500

4. 재원조달 방안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50	150	150	150	150	750
도비	일반회계	100	100	100	100	100	5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50	250	250	250	250	1,250
민간							
기타							
합계		500	500	500	500	500	2,5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문화예술과 남정근(950-352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국비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조성계획 : 매년 3개소 정도
- 선정방법 : 시군의 공모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

2. 도비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조성계획 : 매년 2개소 정도 선정지원
- 선정방법 : 시군의 공모신청을 받아 시군의 운영지속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군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경상북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시·군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지원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 본부장의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도 본부장은 피해지역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 본부장은 시·군 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도 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 및 지원 할 수 있다.

②위험도 평가지원반 반장은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평가지원반은 반장외 반원은 「건축물, 도로, 농업기반시설, 산업단지, 상·하수도, 철도, 가스, 전력·통신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분야 및 지진관련 업무」도 담당 실과팀장 등으로 5~10명 이내로 도 본부장이 임명한다.

④위험도 평가지원반은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해당시설물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⑤위험도 평가지원반은 지진피해 시설물 발생즉시 구성·운영 한다.

⑥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시 정보수집
2.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군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4. 기타 시·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6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도 본부장은 시·군에서 등록·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의 자문 또는 교육지원을 통하여 시·군 위험도 평가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도 본부장은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시·도 본부장 및 시·군 지역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시·도 본부장 및 시·군 지역본부장,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지원) ①위험도 평가지원에 참석한 반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 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한다.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군 지역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학교환경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 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운영) ①협의회는 협의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협의 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장 및 환경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9조(수당 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경상북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6조 제목의 “구성” 뒤에 “· 운영”을 삽입하고

제6조제2항 중 “본청 소속”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제7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는 “하며, 한 차례만”으로

제8조제3항 중 “본청 소속”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중 “도지사”는“경상북도지사”로, “도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원안과 같음)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원안과 같음)
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본청 소속의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장 및 환경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운영) ①(원안과 같음) ②————경상북도교육청———— ③(원안과 같음) ④(원안과 같음) ⑤(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7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_____ 하며, 한 차례만 _____ ② (원안과 같음)
제8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본청 소속의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원안과 같음) ②(원안과 같음) ③ _____ _____경상북도교육청 _____ _____
제9조(수당 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u>제10조(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u>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학교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교육장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u>제11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u>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도교육감</u>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u>경상북도지사 _____ _____ <u>교육감</u> _____ _____ 1~8. (원안과 같음)
<u>제12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11조(시행규칙)</u> (원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안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호 중 “e-러닝학습지원체제”를 “경북교육포털서비스 「내친구교육넷」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재난·재해”를 “연구원의 재난·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e-교육지원센터”를 “GETV(경북 교육IPTV)”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에 제22호를 현행 제11조제21호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제36조제4항 관련)

야영장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제18호 중 “재난·재해” 앞에 “연구원의”를 삽입하고

제11조제20호 중 “GETV” 뒤에 “(경북교육IPTV)”를 삽입한다.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를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로,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5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교설립예정지”를 “학교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학교의 보건·위생”을 “학교환경위생정화”로 “의뢰”를

“요청”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정화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위원이 임기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위원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은 신규 임명 되거나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교육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4에 해당하여 해임·해촉되는 경우
 2. 위원이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 제8조제1항제4호 중 “3회 연속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를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한다.
- ①위원장은 제3조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제10조제3항 중 “제1항1호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서기 약간인을”을 “서기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제6조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제6조제1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제2호 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u>—————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고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2조(설치)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제5조에 따라————— ————— —————<u>소속으로</u>—————	제2조(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능) (생략) 1. (생략) 2.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 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4. <신설> 5. 기타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동일) 2. 학교용지————— ————— 3. 학교환경위생정화————— —————<u>요청</u>————— 4.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정화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3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부위원장————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위원이 임기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위원으로 본다.	제4조(구성) (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위원 정수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 ———— 당해 ————— ———— ②———— 남은 임기로 ————— ———— 남은 임기가 ————— ———— —아니한 경우 —————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2년 — 하며, 한 차례만 ———— —해당— ———— ②(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자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 사람은 —— 1. —— —— 사람 2. —— —— 사람
제7조(위원의 의무) ①~③ (생략) ④〈신 설〉	제7조(위원의 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신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7조(위원의 의무)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조에 정한 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계 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3.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② <u>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4에 해당하여 해임·해촉 되는 경우 2. <u>위원이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제 8 조 (위 원 의 자 격 상 실)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3. <u>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u>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u>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경우 새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이 경우의 위원회 위원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 <u>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u> 1. 교육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이하“해제심의”라 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2. 교육장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 환경 및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3.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생략)	3. <u>관계 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u> 4. _____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② <삭제> <u>제10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제3조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u> 1.~3. <삭제> ②(현행과 같음)	<u>제10조(회의 등)</u>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③교육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3. (생략) ④<신설> ⑤ (생략) ⑥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신설>	③—————제3조 ————— ————— 1.~3.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 ————— ————— —————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생략)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 서기를 ————— ②(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및 서기)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살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 ————— 그 밖에 ————— —————	제13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 그 밖에 ————— ————— —————	제14조(운영세칙) (개정안과 같음)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제261회 임시회)



2013. 4 인쇄 / 2013. 4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



İSTANBUL-GYEONGJU
DÜNYA KÜLTÜR EXPO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상북도는 2013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기 간 : 2013. 8. 31 ~ 9. 22 (23일간)

장 소 : 터키 이스탄불시가지 일원

주 제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 행사 프로그램(9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공 연 _ 한터 전통문화공연·오케스트라합동공연

전 시 _ 한국문화관, 예술교류전

영상·체험 _ 영화축제, 한터 전통문화체험

특별행사 _ K-POP, 세계민속공연축제 등

의정·활동보고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 주 시
GYEONGJU



이스탄불시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